

## 취재보도관행과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기능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전주에서 지역 언론계, 학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의 인사를 초청, 지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9월 8일 전주 리베라 호텔에서 김학수 위원(서강대학교 신방과교수)의 주제발표와 주명준 위원(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논문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편집자 주

김 학 수

중재위원 · 서강대 신방과 교수

### 1. 한국언론의 전통

필자는 한국언론의 전통을 "계몽적 치외법권주의"로 규정한 바 있다. 한국의 언론은 서구에서처럼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탄생한 정보상품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성순보(1883)는 개화파의 주도로 박문국에서 발행한 관보였으며, 독립신문(1896)도 겉으로는 민간신문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정부의 지원으로 개화를 촉진하고 일본예속을 벗어나기 위한 준정부지였다. 모두 국가이념을 국민들에게 계몽하기 위한 일종의 정부 홍보지였다.

그 이후에 나타난 소위 민간신문이라는 것들도 대동소이했다. 언론상품 판매 자체를 통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목표보다는 민족적, 사회적 대의명분을 내걸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언론을 이용한 다른 정치적, 기업적 이익의 획득에 더 목표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언론 소유자들은 국가이념을 홍보해 주는 대가로 국가권력이 베푸는 특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내지 기업적 이익에 이용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계몽적 치외법권주의를 과학적 분석들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한국언론은 전적으로 정보공급자의 관점에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상품의 소비자 관점을 중심으로 발달한 서구언론과는 달리 한국언론은 정보소비자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직 정부 내지 언론기관 자체의 정보공급자 관점으로 정보상품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바로 계몽의 철학이고, 치외법권주의적인 것이다.

### II. 한국언론의 취재원 과보호 관행

취재원 보호는 사실 언론의 오랜 관행이며 중요한 원칙이다.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고서 공공조사기관도 아닌 사적 기업으로서 언론이 중요한 정보를 얻어내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요한 취재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유능한 언론인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취재원 보호는 중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얻기 위한 순전히 언론인의 직업주의적인 사익 때문만은 아니다. 그런 취재원으로부터 나온 정보가 결과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하여 공익에 기여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또한 취재원 보호는 취재원이 개인적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더 큰 공익에 기여하는 취재원의 정보가 취재원의 소속기관이나 동료집단의 사익에 불이익을 줄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취재원을 밝히면 그 취재원이 물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심대할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취재원 보호는 때로 취재원 개인의 신체상의, 물질상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가 갖고 있는 피해 또한 적지 않다.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기사 자체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주지 못한다는 점이다. 막연히 고위당국자, 관계당국, 정통한 소식통, 김모, 박모 등의 이름을 빌려 표현한 기사가 과연 얼마나 사실인지 언론수용자는 파악할 길이 없다. 따라서 언론수용자는 그 기사와 기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언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그것은 또한 기사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게 만들어주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정보유통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무엇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때 기자가 추측 기사를 남발할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언론에서 취재원 보호의 명분 아래 소설식 기사, 즉 진실이 아닌 또는 정확하지 않은 기사가 양산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길이 없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보를 양산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에 대한 요강을 적시하고 있다. 제 5 조 취재원의 명시와 보호 보도기사는 취재원을 원칙적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표현해서는 안되며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취재원을 빙자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자가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이를 보도해서는 안 된다.

취재원 보호는 취재원의 익명 요청이 분명하게 있고 기자가 그것을 명확하게 동의했을 경우 또는 취재원의 안전과 정당한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그 외 대부분의 경우에는 취재원 명시를 원칙으로 해야함을 알 수 있다.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한국언론의 취재원 "과보호" 관행은 결과적으로 정보공급자의 관점을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취재원들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정보를 기자에게 전달하고, 기자는 그 취재원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정보공급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게 된다. 이것 또한 앞에서 본 "계몽적 치외법권주의" 및 "전문직업주의의 미비"가 내포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정보공급자 중심의 전통과 같은 차원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한국언론의 정보소비자는 언론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 III. 한국언론의 취재원 과무시 관행

한국언론의 취재원 "과보호" 관행은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과무시" 관행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모든 기사에 담겨지는 사안은 반드시 둘 이상의 이해당사자 측들을 개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한국언론은 흔히 발표저널리즘의 왕국으로 불리어지는 것처럼, 주 취재원인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는 반면에 그것의 반대 당사자 측 주장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이것이 바로 취재원 "과무시" 관행이다.

반대 당사자측도 분명히 또 한 측의 취재원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대 당사자 측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사는 적어도 공정하고, 나아가 진실을 추구한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관련정보를 먼저 발표하는 첫 취재원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만을 부각시킬 것이 들림 없고, 그런 만큼 반대 당사자 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내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후자에 대한 취재가 이루어질 때만이 첫 이해당사자 측인 취재원의 발표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어느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반대 당사자 측 취재원을 무시하는 관행은 최근에 커다란 물의를 빚었던 장기신용은행의 자회사인 장은증권 직원들이 고의로 회사의 영업정지를 신청하기 하루 전에 엄청난 명예퇴직금을 받아간 것에 대한 MBC 보도에서도 나타났다. 이 기사는 소위 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커다란 논란이 되었던 당시의 세태에 편승하여 언론 수용자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다. 마찬가지로 중재위원회 서울 제 2 중계부에 접수된 이 기사는 MBC 측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첫 취재원인 금융감독위원회의 보도자료 및 장은 증권의 모 기업인 장기신용은행 측에 주로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토요일 오후에 전달된 보도자료를 갖고서 저녁 9시 뉴스에 내보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반대 당사자 측인 장은증권 직원이나 노조측을 취재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장은 증권 직원들은 사실과 다르게 엄청난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한국언론이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주로 보다 강한 권력이나 자본을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 측의 취재원에 의존하는 소위 발표저널리즘의 관행은 너무나 유명하다. 그런 만큼 일반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반대 당사자 측의 취재원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을 한국언론은 갖고 있다. .

#### IV. 한국언론의 의견기사 중심 관행

한국언론에서 거의 모든 기사가 의견기사라는 점이 필자의 견해이다. 이것은 곧 한국언론이 사실 중심의 일반기사(straight/general news)와 의견 중심의 논평기사(opinion/column articles)를 거의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언론에서 반드시 엄격한 의미가 아니더라도 보도의 객관성을 논의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인다.

요즈음 한국언론도 선진국의 권위 있는 언론들처럼 일반기사와 논평 기사를 구분하기 위해, 신문의 경우 의견 페이지를 따로 두어 사실, 논단, 독자의견 등을 모두 한 곳으로 모으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일반기사에 사실적인 내용을 넘어 기자 개인의 강한 의견을 노골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따라서 소위 일반기사와 의견기사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는 것이 한국언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 V. 결론: 언론중재제도의 보완기능

언론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보도내용의 관련 이해당사자 측(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정보공급자인 언론에 대항하여 직접적인 정보소비자인 반대 당사자 측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언론중재제도이다. 따라서 비록 매우 제한적이지만 반대 당사자 측이라는

직접적 정보소비자의 관점을 언론보도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은 분명히 한국언론의 고질적 병폐인 정보공급자 중심의 관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은 반대 당사자 측의 명예와 권익이 손상되는 사실은 그 당사자 측의 직접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거대한 규모의 일반 언론 수용자들의 간접적인 판단에 의해서 더욱 크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그런 일반 언론 수용자들의 판단도 만약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그들 일반 언론 수용자들의 명예와 권익도 간접적으로 손상받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반대 당사자 측의 손상을 최소한 보상해주는 언론중재제도는 종국적으로 언론보도에 일반 정보소비자집단의 관점을 반영시키는 보완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 연세대 영문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신문학 석사, 워싱턴대 언론학 박사
- 한양대학교 교수
- 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